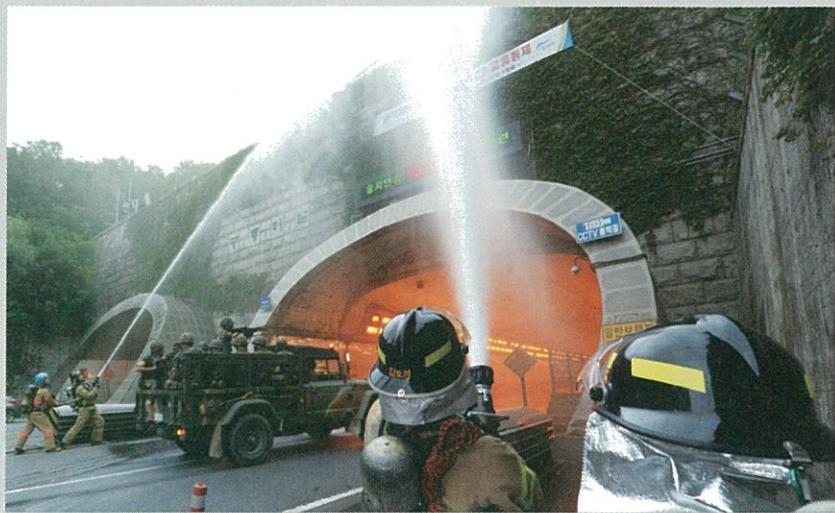


Safety Main News



2014 을지연습 첫날인 8월 18일 서울 구룡터널에서 민관군이 합동으로 터널 화재 대비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2014년도 산업재해율, 전년 대비 하락할 전망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산업재해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산업재해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6월 말 현재 산업재해율은 0.27%로 기록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02%p 감소한 수치다.

재해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1407명이 줄어든 4만3824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사고 재해자수는 4만14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46명이 감소했고, 질병 재

해자수도 3675명으로 61명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고·질병 사망자수는 모두 증가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전체적으로 상반기에는 9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사망자는 529명으로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 6명이 늘어났고, 질병 사망자는 448명으로 30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사망자는 늘어났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볼 때 근로자수가 4.7% 증가한 영향으로 사망만 인율은 1.6% 감소한 0.6로 집계됐다.

상반기 산업재해현황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재해자의 경우 업종별로는 기타의 사업(33.1%),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48.5%),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근로자(20.1%) 등에서 빈발했다. 아울러 남어진(18.4%), 끼임(16.8%), 떨어짐(15.4%) 등 이른바 3대 재해형 재해가 재해유형의

절반 이상(50.6%)을 차지했다.

사망자의 경우에는 건설업(43.7%)과 5~49인 사업장(38.3%), 60세 이상 근로자(28%)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가 36.9%로 가장 많았다.

즉,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60세 이상 근로자들을 위한 재해예방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역별 재해율은 △서울청 0.16%(전년 동기 0.18%) △중부청 0.31%(0.34%) △부산청 0.31%(0.32%) △대구청 0.29(0.30%) △광주청 0.31%(0.35%) △대전청 0.28%(0.30%)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모든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0.1%p에서 0.4%p까지 전년 동기 대비로 재해율이 줄어든 것이다.

이와 같은 상반기 재해현황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산업안전정책을 펼쳐나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을지연습 실시, 국가 비상 및 재난사태 대응 능력 강화

올해 47번째를 맞는 을지연습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을지연습에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및 중점 관리지정업체 등 3700여 개 기관 총 48만 여 명이 참여해, 국가 비상 및 재난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을지연습이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업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간 1회 전국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을 말한다.

금년 을지연습은 최근 대형 재난사고 및 안보상황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보 위협 및 재난 위험을 동시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방사능 및 유해화학 물질 누출, 해양사고 등 복합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조치 해 골든타임 이내에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초동조치 훈련과 함께 긴급 구조 기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기동의료반 활동 등 통합구조 활동 등을 집중 훈련했다.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향후 국가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전설비 세액공제 3년 연장 추진

안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3년 연장돼 적용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공제율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 즉,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8월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산재예방시설, 가스안전관리 시설 설치 시 3%의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설비 등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됐다. 그리고 투자세액공제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둘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 구분 없이 3%의 세액공제율을 일괄 적용시키던 것에서 내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의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대기업은 기존대로 3%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공제 대상에 기존의 시설에서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소방시설 등을 추가했다. 소방시설 설치법 등에 따른 자체소방대 설치의 의무가 없는 자가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화재, 도난 등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 법정기금사용 범위에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련 설비 투자가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설비 투자와 관리는 필수이지만, 안전설비

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상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안전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와 관련해 기존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외에 토양오염방지시설이 추가되면서, 기업의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노동 근로자 위한 사업주 및 정부의 의무 강화

감정노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8월 7일 대표 발의했다. 감정노동 근로자는 서비스, 판매업, 콜센터 종사자 등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고객을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노동, 즉 감정근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상당수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지난달 7일 감정노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에도 감정노동의 재해와 관련된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정부의 책무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평가 및 개선’을 포함하고,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감정노동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포함하여 감정노동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같은 방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

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규정하는 제37조에 ‘감정노동’ 항목을 새로 만들어 감정노동으로 인한 질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백현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건설재해 예방 당부

백현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8월 8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백 이사장은 대구지역 건설현장 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름철 대형사고 예방과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대구지역의 주택분양시장 호조에 힘입어 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건축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백 이사장은 “현장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자율 안전관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구실 안전관리 미흡 시 과태료 부과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가 법률안 개정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실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연구실 안전환경 조

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연구실 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법에 명시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미래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구실에서 안전설비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설치 조항을 명문화했다. 참고로 안전설비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활동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물리·화학적 유해요소와 화재, 폭발, 누전 등의 사고로부터 연구활동 종사자와 관련 연구시설을 안전하게 보호·방호하기 위한 배기장치, 시약장, 비상샤워기, 가스누출감지기, 멀균기,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일련의 설비 및 개인 보호장비를 말한다.

동법 제6조 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적절한 안전설비와 개인보호구를 설치하고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연구실 책임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관련교육도 실시토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연구주체 장의 연구실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관리 이행 현황을 기록하고 서류로 보존해야 한다. 미래부 장관은 매년 이를 검사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또 평가 결과는 각 기관에 대한 감독·지원



등에도 반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연구주체의 장이 해당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동안 시정명령을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정안전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폭발방지용 안전밸브 검사주기 일원화

정부가 압력용기 등 안전밸브에 대한 검사주기를 일원화하도록 규칙을 개정한다.

압력용기 등에 설치된 폭발방지용 안전밸브에 대한 검사주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각각 달

리 규정돼 있어 검사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 검사가 어느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다만 설치된 안전밸브를 검사주기마다 국가정기판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해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개정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도 기반 검사제도를 적용받도록 하고, 이후 적합판정을 받은 고압가스 특정설비에 부속된 안전

밸브는 그 판정결과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않거나 납으로 봉하지 않도록 하는 기존 부속조항은 그대로 남겨둔다.



수년 후 트라우마 발생해도 추가상병 인정

사고 이후 수년이 지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가 발생해도 이는 추가상병으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월 10일 전했다.

재판부는 “트라우마는 외상 후 길게는 30년이 지나 발병할 수 있다”라며 “이 씨는 4년간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만성적 상태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고 내용과 이후 원고가 호소하는 증세들이 전형적인 트라우마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